



## 건설교통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 시달

1. 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귀 시·도·협회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주거환경팀-6586(200.12.18)의 관련입니다.

3. 「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」을 일부 개정 고시(2006.12.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55호)후 2007.2.1일부터 시행 중이나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붙임과 같이 「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」을 시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 1부. 끝.

## 건설교통부장관

수신자 강원도지사, 경기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광주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서울특별시, 울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전라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부산광역시, 대한건축사협회회장,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,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, 한국주택협회회장, 한국기술인협회회장

직원 사무관 팀장

협조자

시행 주거환경팀-836 (2007.02.28.) 접수

우 427-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(중앙동 1번지) / <http://www.moct.go.kr>

전화 02-2110-8601 전송 02-503-7413 / [wskim999@moct.go.kr](mailto:wskim999@moct.go.kr) / 공개